

평택소사별 B-2BL 10년 공공임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 평택소사별 B-2BL은 국민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 위탁관리부동산회사, 이하 (주)NHF제1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주)NHF제1호와 체결함
-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공사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 방문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나나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 제출일시를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기간연장 없음)
-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예정) LH 홈페이지(www.lh.or.kr)를 확인하시기 바람(추후 평택소사별 B-2BL 티저사이트 운영 예정)

1. 공급대상 및 일정

공급대상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일원
평택소사별 택지개발지구내 B-2BL 632세대

블록	공급유형	전용면적(m ²)	타입	건설호수	입주
B-2BL	10년 공공임대	74	74A	128	'17.8(예정)
		84	84A1	74	
			84A2	382	
			84B	48	

일정

구분	일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15. 7. 10(예정)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접수일	2015. 7. 20(예정)	분양홍보관 방문접수(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상기 일정은 추후변동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 미 정[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2015.7.10 공고(예정) 참조]

※10년 공공임대주택

- 개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공급가격
 - 임대보증금+임대료(「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74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이하에서 결정함)
 -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금액임**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각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함)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 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예정)]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필요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우수기능인, 10년이상복무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남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예정)] 현재 무주택이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 : 「무주택세대구성원」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 예정)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당첨일로부터 3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5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3월)내에 있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하며, 미계약, 미신청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므로,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3.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예정)]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할 것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각 1통)

구비서류	구비조건
주민등록표등본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 제출대상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우수기능인, 10년이상복무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특별공급신청서	공사 소정 양식(접수장소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또는 여권사본 지참 (배우자 신청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도 지참)
도장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주1)}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신청일에 신청접수장소에 비치) 및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주1)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0(예정)] 현재 만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층 주택 우선 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되고,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된 경우 그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신청자(본인)의 인감도장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위임장 양식은 접수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또는 여권사본





4. 기타사항

- 평택소사별 B-2BL은 국민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회사, 이하 (주)NHF제1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주)NHF제1호와 체결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일[2015.7.20(예정)]에 분양홍보관(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580-5)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자세한 일정, 임대조건 등은 향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공고 [2015.7.10(예정)]될 예정이오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므로, 1인 중복청약, 세대원 중복 청약으로 1세대 내 2건 이상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추천, 동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계약자의 세대에 속한 분에 한함)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설치항목 : 입주자모집공고[2015.7.10(예정)] 확인요망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내(계약이후 신청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이 불가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5. 단지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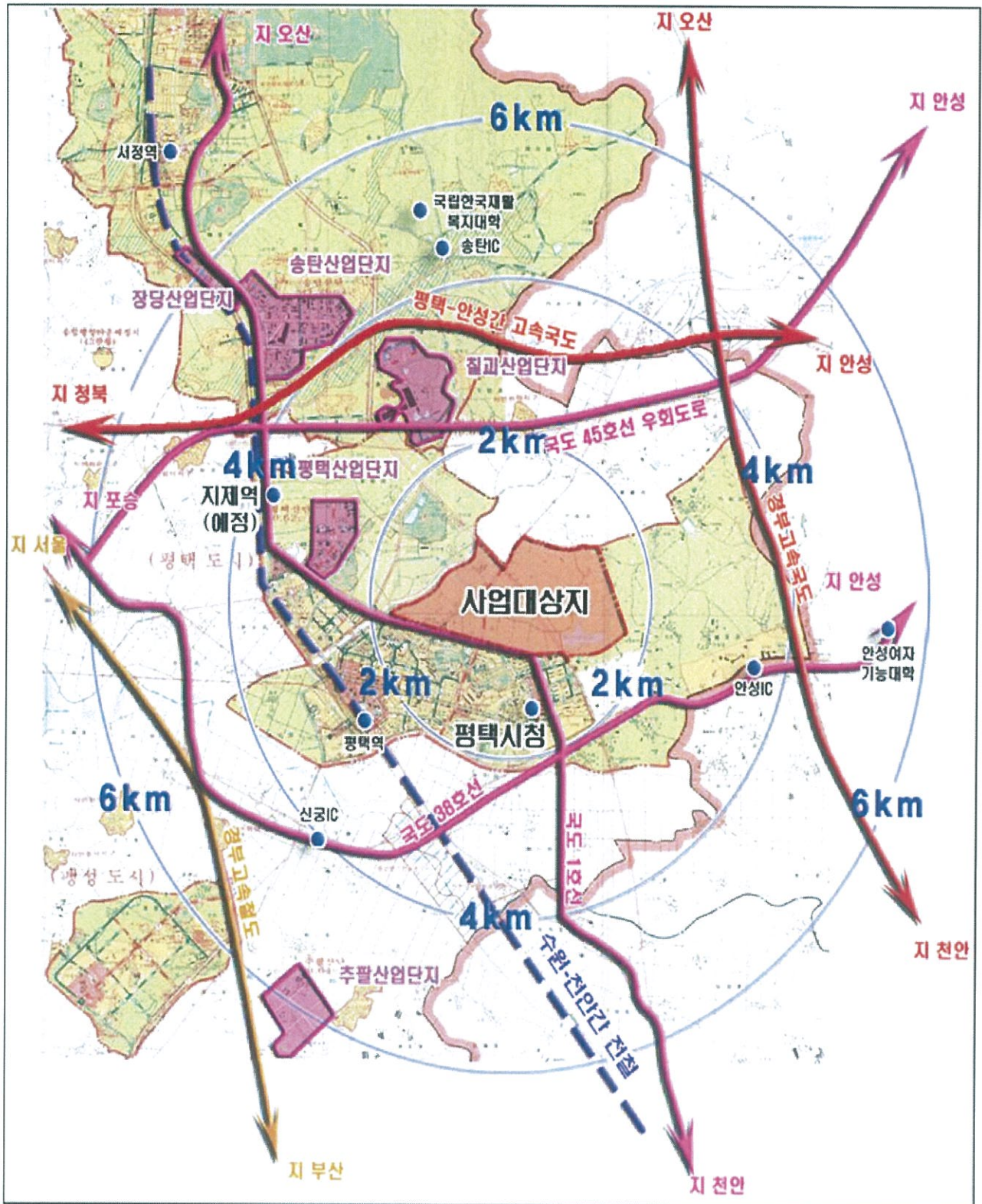
6. 단위세대 평면도

74A(128호)	84A1(74호)
	
84A2(382호)	84B(4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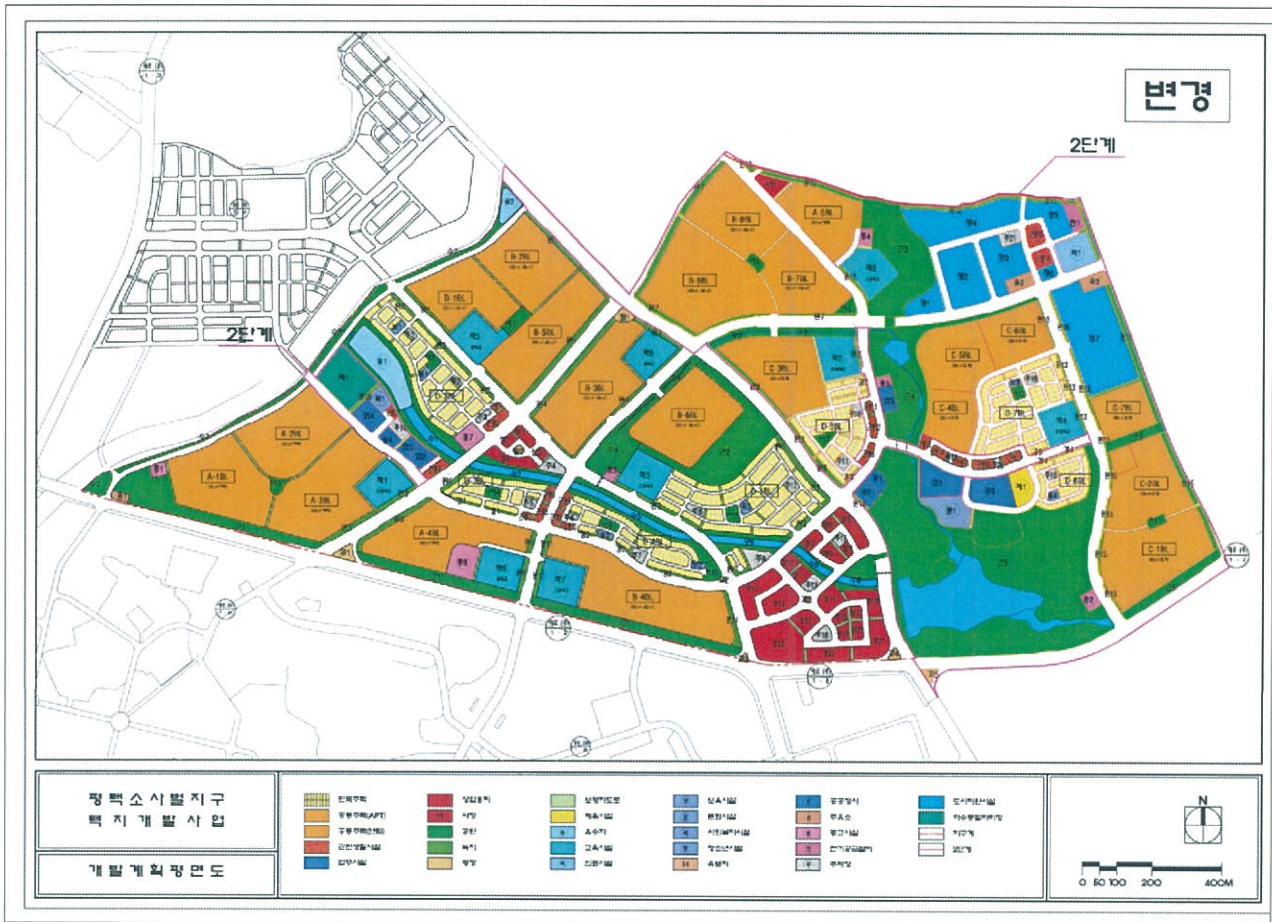
※ 상기평면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팜플렛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치도



8. 토지이용계획도



9. 청약 및 임대 상담

방문문의	
	<p>■ 평택소사별 LH분양홍보관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580-5 - 운영일시 : 2015.7.10(금)~9.11(금), 10:00~17:00 *단, 상기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p>■ 오시는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선 평택역 하차 후 택시 이용 - 1호선 평택역 하차 후 5번, 6번 버스를 이용 비전동 효성백년가약 (효성아파트 2단지)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5분 거리 (효성아파트 2단지에서 북측으로 630M) <p>※ 홍보관 방문시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B-2블록 공식홈페이지	전화문의
<p>■ 주 소 : 추후 개설예정</p>	<p>■ LH 콜센터 : 1600-1004</p> <p>■ LH 평택사업본부 : 031-656-4995</p>

시 행 : [주]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부서 평택사업본부 판매부)